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95

발의연월일: 2021. 8. 11.

발 의 자:최연숙・金炳旭・이태규

김형동 • 권영세 • 이용호

이명수 · 백종헌 · 권은희

곽상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,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 니할 수 있고,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 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,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제1항제1호

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 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(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)	제92조(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)
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	①
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	
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	
(이하 "추납보험료"라 한다)의	
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
	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
	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
	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
	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
<u>1.</u> (생 략)	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•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